

중요무형문화재 보존대책
(重要無形文化財 保存對策)
-현황과 문제점-
(現況과 問題點)

金 田 培
(文化財一課長)

1. 서 언(序 言)

최근(最近) 민족주체의식(民族主體意識)이 고조(高潮)됨에 따라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중요성(重要性)과 가치성(價値性)에 대한 논의(論議)가 활발(活潑)해지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대학가(大學街)에서 민속예술(民俗藝術)이 활기(活氣)를 띠고 있으며 학계(學界)에서는 전통문화(傳統文化)에 대한 연구(研究)가 성행(盛行)하고 무대(舞臺)에서도 음악(音樂) 무용(舞踊) 연극(演劇) 등 전통물(傳統物)의 발표공연(發表公演)이 많고 관중(觀衆)의 호응도가 높다하니 이는 외래문명(外來文明)에만 도취되었다가 서서히 자성(自省)의 기운(氣運)을 회복하는 단계이며 전통(傳統)의 토대가 굳어져 고유문화(固有文化)의 토착화작업(土着化作業)이 결실(結實)을 보게 되는 좋은 징후(徵候)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실체(實體)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전통문화를 앞세워 오류(誤謬)를 범하는 사례(事例)가 많다. 그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理解)없이 우선 적용(適用)에만 급급한 나머지 발생하는 시행착오(試行錯誤)라고 할 수 있다.

현(現) 시점에서 볼 때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위치(位置)는 견고하지 못하다. 따라서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발굴(發掘)·적용(適用)은 매우 긴급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서는 곤란하다. 성과(成果)만을 강요(強要)하면 졸속과 오류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필자(筆者)는 여기에서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존(保存) 전승(傳承)에 대한 두 가지 큰 과제(課題)를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첫째는 단절(斷絶)위기에 있는 전통문화의 원형(原形)을 발굴(發掘), 보존(保存), 전승(傳承)하는 것이요. 둘째는 잘 보존(保存)된 전통문화(傳統文化)는 새 민속문화창조(民俗文化創造)의 기반(基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문화(傳統文化)를 기름진 밭으로 본다면 새 민족문화(民族文化)란 그 밑거름으로 자란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성(傳統性)이 없는 민족문화(民族文化)란 있을 수 없고 민족문화창조(民族文化創造)에 이바지할 가치(價値)가 없는 전통(傳統)은 보존(保存)할 의미(意味)가 희박해지는 것이다. 일제(日帝)의 문화말살정책(文化抹殺政策)과 해방후(解放後) 외래문화(外來文化)의 범람으로 전통문화(傳統文化)는 일대(一大) 위기에 처해 民族文化는 혼미를 거듭하다가 최근 민족의식(最近 民族意識)

과 전통의식(傳統意識)이 고조(高潮)됨에 따라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중요성(重要性)과 가치성(價值性)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원형(原形)이 단절(斷絶) 멸실(滅失)위기에 있다. 이하(以下)에서 전통문화보존(傳統文化保存)에 다른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제시(提示)하고 정부(政府)의 대책(對策)과 사견(私見)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의의(意義)

전통문화(傳統文化)라면 그 의미(意味)가 너무 광범(廣範)해서 설명(說明)하기가 매우 곤란(困難)하며 이러한 것이 전통문화(傳統文化)라고 사례(事例)를 모두 열거하기란 더욱 불가능(不可能)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폭넓은 전통문화(傳統文化) 중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 폭을 일단 좁히고 다시 무형(無形)의 문화유산(文化遺産) 즉(卽)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그 폭을 국한(局限)하고자 한다.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란 예술적(藝術的) 가치(價值)가 큰 전통적(傳統的)인 음악(音樂), 무용(舞踊), 연극(演劇), 공예기술(工藝技術), 민속(民俗)놀이 등으로 크게 구분(區分)할 수 있다. 뒤에 다시 설명(說明)하겠지만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중 중요(重要)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하고 그 보유자(保有者)를 인정(認定)하며 이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음악(音樂), 무용(舞踊), 연극(演劇)의 보유자(保有者)를 예능보유자(藝能保有者)라고 말하고 공예기술(工藝技術)의 보유자(保有者)를 기능보유자(技能保有者)라고 말한다. 민속(民俗)놀이를 민속자료(民俗資料)에 분류(分類)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법(現行法)은 무형(無形)의 민속자료(民俗資料)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에 포함(包含)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現行法上)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란 음악(音樂), 무용(舞踊), 연극(演劇) 등 예능분야(藝能分野), 공예기술(工藝技術)과 같은 기능분야(技能分野) 및 민속(民俗)놀이와 같은 무형(無形)의 민속자료(民俗資料)로 크게 구분(區分)할 수 있다.

음악(音樂)으로는 세례약(洗禮藥), 연예약(宴禮藥), 대취타(大吹打), 가곡(歌曲), 가사(歌辭) 또는 시조(時調)의 영창(詠唱), 산조(散調), 농악(農樂), 잡가(雜歌), 민요(民謠), 무락(舞樂), 범패(梵唄) 등을 들 수 있고 연극(演劇)으로는 인형극(人形劇)과 가면극(假面劇)을 들 수 있다.

무용(舞踊)으로는 의식무(儀式舞), 정재무(呈才舞), 탈춤, 바라춤, 승무(僧舞) 등이 이에 속하며

공예기술(工藝技術)로는 도자공예(陶磁工藝), 마미공예(馬尾工藝), 금속공예(金屬工藝), 화각공예(華角工藝), 장신공예(裝身工藝), 나전칠공예(螺鈿漆工藝), 제지공예(製紙工藝), 목공예(木工藝), 건축공예(建築工藝), 피혁공예(皮革工藝), 지물공예(紙物工藝), 직물공예(織物工藝), 염색공예(染色工藝), 옥석공예(玉石工藝), 자수공예(刺繡工藝), 복식공예(服飾工藝), 악기공예(樂器工藝), 초고공예(草稿工藝)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은산(恩山)별신제(祭)나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는 속칭(俗稱) 무속(巫俗)인데 이는 종합(綜合) 예능종목(藝能綜目)으로서 전통예술(傳統藝術)의 주류(主流)인데도 「민속(民俗)놀이」로 분류(分類)하는 것은 무속(巫俗)이 미신(迷信)시 되어 보호대상(保護

對象)이 되지 못한 때문이다.

3.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존대책(保存對策)

-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 -

우리는 역사상(歷史上)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단절기(斷絶基)와 혼란기(混亂期)를 겪어 겨우 민족의식(民族意識)이 싹트고 전통문화(傳統文化)가 정신문화(精神文化)를 주도(主導)해서 새 문화창조(文化創造)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主張)과는 달리 지금도 끊임없이 어느 일각에서는 전통문화(傳統文化)가 인위적(人爲的)으로 소멸되고 있으며 자연도태에 의해 실실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경제개발(經濟開發)과 농어촌개발사업(農漁村開發事業)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설 땅을 잃게 되었음은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인위적(人爲的)인 소멸이라 할 수 있고, 생활방식(生活方式) 또는 문화의식(文化意識)의 변천으로 인해서 우리의 너리에서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일실이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일부(一部)인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가 처(處)해 있는 급박(急迫)한 현실(現實)과 종합적(綜合的)인 문제점(問題點)을 개관(概觀)하고 정부(政府)의 이에 대해 대책(對策)과 사견(私見)을 피력(披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호대상(保護對象)의 적극적(積極的)인 조사파악(調查把握)이다. 벌써 보호대상(保護對象)이라는 어의(語義)에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가 위기(威期)에 처해 있으며 지원(支援)없이 스스로 보존전승(保存傳承)되기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가진 역경 속에서 간신히 이어진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에 대(對)한 완벽(完璧)한 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해서 보호대상(保護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재보유자(無形文化財保有者)들의 사회적(社會的) 지위향상(地位向上)이다. 역사상(歷史上) 우리는 예능인(藝能人)과 기능인(技能人)을 경시(輕視)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現代)의 음악가(音樂家), 현대(現代)의 공예가(工藝家)들과 따로 보려는 것은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진흥(振興)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단절위기(斷絶威期)에 있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기(技)·예능(藝能)을 애써 배워 오늘에 이어준 공로(功勞)를 높이 평가(評價)한다면 오히려 존경심(尊敬心)마저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무형문화재진흥(無形文化財振興)을 위(爲)한 여건(與件)이 완비(完備)되지 못했다. 물론(勿論) 정부(政府)에서 매월(每月) 생계보호비(生計保護費)와 전수교육비(傳授教育費)의 일부(一部)를 지원(支援)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未洽)한 실정(實情)이며 상설(常設) 발표무대(發表舞臺)가 적고 정부(政府) 이외(以外)의 지원단체(支援團體)가 적다. 특(特)히 재벌(財閥)그룹의 문화재단(文化財團)에서 이 분야(分野)에 많은 지원(支援)이 있어야 하겠다. 적어도 활동(活動)이 가능(可能)한 무형문화재의 기(技)·예능보유자(藝能保有者)가 생계(生計)로 인한 장애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社會的)인 여건(與件)을 조성(造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토착화방안(土着化方案)이다. 당국(當局)이나 전문가(專門家) 또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유자(保有者)가 아무리 중요(重要)하다고 주

장(主張)해도, 일반화(一般化) 내지는 보편화(普遍化)하여 그 뿌리가 대중(大衆)에게 내리기 전에는 전통문화보존(傳統文化保存) 실효(實效)를 거둘 수 없다. 전통문화(傳統文化)란 전통적(傳統的)으로 우리 민족(民族)의 정신문화(精神文化)를 주도(主導)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핏속에도 이러한 전통은 은축(縑蓄)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理解)하고 즐길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可能性)은 유전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전통문화(傳統文化)의 토착화(土着化)를 이룩하여 새 문화창조(文化創造)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강력(強力)하고 차원(次元)높은 정부기구(政府機構)가 필요(必要)하다.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존(保存), 전승(傳承)이 시급(時急)하고 중요(重要)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政府)로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더욱이 국방(國防)과 경제(經濟)를 중요시해야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정책입안(政策立案)에 있어 이러한 분야(分野)에 큰 관심(關心)을 기울이기란 현 단계(現段階)에 서는 기대하기 곤란(困難)하다. 따라서 행정수반(行政首班)의 직속(直屬)되는 차원(次元)높은 관리기구(管理機構)의 설치(設置)가 긴급(緊要)하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問題點)을 중심(重心)으로 항목별(項目別)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3-1.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지정(指定)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依)하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중 중요(重要)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하고 그 보유자(保有者)를 인정(認定)하여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중요(重要)한 것을 지정(指定)한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보호대상(保護對象)을 선정(選定)하는 작업(作業)이며 보유자(保有者)를 인정(認定)하여야 한다함은 형체(形體)가 없는 무형(無形)의 문화재(文化財)이기 때문에 기능(技能)이나 예능(藝能)을 갖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존재(存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자(保有者)가 있는 종목(種目)에 한(限)하여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지정(指定)이 가능(可能)하며 보유자(保有者)가 사망(死亡)하고 승계(承繼)할 수 있는 대상자(對象者)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當該)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는 당연(當然)히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대상(保護對象)의 확보작업(確保作業) 즉(卽) 지정(指定)을 위한 조사(調査) 발굴작업(發掘作業)이 종합적(綜合的)으로 실시(實施)되어야 하며 그 결과(結果)를 검토(檢討)하여 지정대상(指定對象)을 선정(選定)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原則)이다. 그러나 종합조사(綜合調査)를 실시(實施)하자면 장기간(長其間)이 소요(所要)될 뿐 아니라 인적(人的), 물적(物的) 뒷받침이 원할 치 못해, 현재(現在)로서는 우선 학계(學界)에 널리 소개되어 있는 종목(種目), 다른 연구보고(研究報告)에 의(依)해서 가치(價値)가 인정(認定)된 종목(種目)에 대(對)하여 별도의 지정조사(指定調査) 실시(實施)한 후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검토를 받아 지정(指定)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후(今後) 종합조사(綜合調査)를 조속히 실시하여 멸실위기(滅失威期)에 있는 대상(對象)을 발굴(發掘)하여 지정(指定) 보호(保護)하여야 할 것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공포(制定公布)된 이래 60종(種)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가 지정(指定)되었으며 155명(名) 보유자(保有者)가 인정(認定)되었다.

지 정 현 황(指 定 現 況)

年度別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계
指 定	7		4	7	5	8	6	10	1	4		5	1		4		62
解 除										1		1					2

3-2.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保護)

일단 지정(指定)된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존(保存)을 위해서는 우선 보유자(所有者)에 대(對)해 제반(諸般) 보호대책(保護對策)과 원형(原形)의 보존(保存)을 위한 기(技)·예능(藝能) 연마(研磨)와 진흥(振興)을 위한 지수대책(支授對策)이 중요(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보유자(所有者)의 보호대책(保護對策)으로는 1968년 이래 매월(每月) 일정액(一定額)의 생계비(生計費)를 지원(支援)하고 있으며, 1979년도(年度)에는 발표공연(發表公演), 전시회(展示會) 또는 전수교재(傳授教材)를 발간(發刊)하는 등 특별활동(特別活動)에 대(對)한 지원대책(支授對策)을 마련하였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지원비(生計支援費)는 미흡(未洽)한 실정(實情)이다. 몇몇 보유자(所有者)를 제외한 대부분(大部分)의 보유자는 일정(一定)한 생업(生業)이 없으므로 생활(生活)이 넉넉지 못해 기(技)·예능(藝能) 연마(研磨)에 진력(盡力)하기가 곤란하다.

보유자(所有者)의 원형보존대책(原形保存對策)으로 第1회 이상 그 보유종목(保有種目)에 대(對)한 기(技)·예능(藝能)을 일반(一般)에게 공개(公開)하도록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 의무사항(義務事項)으로 규정(規定)하고 있다.

생계비지수현황(生計費指數現況)

* 支授額은 月額인

年度別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支援額	3,000 60세이상	5,000	5,000	7,000 60세이상 年	20,000 50세이상 年	30,000 (“) 年	30,000 (“)	30,000 (“)	36,000 (“)	40,000 (“)	50,000	80,000	96,000
			20,000 59歲이하	100,000 49歲이하	100,000 (“)	150,000 (“)	150,000 (“)	180,000 (“)	240,000 (“)				

일반공개(一般公開)를 위해서 기(技)·예능(藝能)을 연마(研磨)할 기회(機會)를 갖게 되며, 보유(保有)하고 있는 원형(原形)의 변모(變貌) 여부를 점검(點檢)하는 계기가 되므로 원형(原形)을 유지하고 퇴색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制度)라 할 수 있다.

현재(現在) 시행(施行)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일반공개사업(一般公開事業)은 발표공연(發表公演)과 전승공예전(傳承工藝展)이다. 예능(藝能)의 공개사업(公開事業)으로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발표공연(發表公演)을 채택(採擇)하고 있으며 기능(技能)의 공개사업(公開事業)으로 전승공예작품전시회(傳承工藝作品展示

會)를 채택(採擇)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발표공연(發表公演)은 1965년 시작(始作)해서 금년(今年)에 10회(回) 공연(公演)을 실시(實施)한바 있는데 특히 10회(回) 공연(公演)에는 공연(公演)이 가능(可能)한 전(全) 종목(種目)의 전(全) 보유자(保有者)가 전(全) 과정(科程)을 발표(發表)하는 마당놀이(16종)는 덕수궁 뒷뜰에서, 무대종목(舞臺種目)(19종)은 국립극장(國立劇場)에서 공개(公開)하여 관중(觀衆)의 호응이 컸으므로 「마당극장」의 가능성과 상설무대(常設舞臺)의 가능성(可能性)을 보여주었다.

발표공연현황(發表公演現況)

回數	1	2	3	4	5	6	7	8	9	10
年度	65	65	66	67	68	69	70	71	76	79
場所	국립극장	경복궁	창경원	시민회관	국립극장	국립극장	국립극장	국립극장	국립극장	국립극장
參加種目	5종	5종	5종	5종	5종	8종	5종	6종	10종	35종

전승공예작품전시회(傳承工藝作品展示會)는 1973년도(年度)에 시작(始作)해서 금년(今年)에 4회(回) 전시회(展示會)를 개최(開催)한바 있는데 특히 4회(回) 공예전(工藝展)에는 대통령상(大統領賞)과 국무총리상(國務總理賞)이 신설(新設)되고 상금(賞金)이 대폭(大幅) 인상(引上)되어 국전(國展)규모의 전시회(展示會)로 부상하였다. 보유자(保有者)의 작품(作品)을 의무적(義務的)으로 출품(出品)시켜 전통공예기술(傳統工藝技術)의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상(大統領賞) 수상자(受賞者)는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로 지정(指定)할 것을 검토(檢討)하는 특전(特典)을 부여하므로서 일반(一般)의 참여도(參與度)를 높이고 숨은 전통공예가(傳統工藝家)의 발굴(發掘)에 주력(主力)했다. 매년(每年) 출품수(出品數)가 늘고 품질(品質)이 향상(向上)됨은 물론(勿論) 일반(一般) 애호가(愛好家)의 호응도 또한 놀랄만하여 전통공예(傳統工藝)가 빛을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공예전시개최현황(工藝展示開催現況)

회수(回數)	1	2	3	4
년도(年度)	73	77	78	79
장소(場所)	창덕궁	세로나백화점	민속 박물관	민속 박물관
최고상(最高賞)	국장상	장관상	장관상	대통령상

※ 대통령상(大統領賞)(1점) 200만(萬)원, 국무총리상(國務總理賞)(1점) 130만(萬)원, 장관상(長官賞)(2점) 각 70만(萬)원, 특별상(特別賞)(5점(點)) 각 50만(萬)원 장려상(獎勵賞)(24점) 상금 없음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점(問題點)은 남아있다. 생계비지원액(生計費支援額)이 실제(實際) 생계비(生計費)에 훨씬 미달(未達)되며, 민속예술(民俗藝術)을 천하게 생각하는 재래의 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그들의 사회적(社會的) 지위향상(地位向上)이 필요(必要)하다. 더욱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원형보존문제(原形保存問題)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란 선대(先代)에서 물려받은 바탕에 당대(當代)의 감각(感覺)이 가미(加味)되어 끊임없이 변천(變遷)해온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원형(原形)이란 무엇인가, 과연 원형(原形)이 있을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시대(時代)의 것을 원형(原形)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수반된다. 다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적(正統的)인 줄거리에 최근(最近) 몇십 년 동안 무리 없이 이어져 내려온 상태라고나 할까. 하여튼 이것이 원형(原形)이다라고 말하기란 매우 곤란한 문제(問題)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원형변경(原形變更)에 대한 논의(論議)가 계속된다. 음악(音樂)의 경우 기본가락을 무시하거나 무용(舞踊)의 경우 기본 동작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의 전통개념(傳統概念)으로 보면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경우 원형문제(原形問題)가 대두되는데 이 문제(問題) 또한 조속히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3.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전승(傳承)

우리에게는 선대(先代)에 물려받은 문화재(文化財)를 잘 보존(保存)하고 보급(普及)하며 한편 후대(後代)에 원형(原形)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전승(傳承)에 대(對)한 문제(問題)가 생긴다. 오늘과 같이 외래문화(外來文化)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통문화(傳統文化)가 위축된 상태에서는 전승(傳承)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금후(今後)에도 전통문화(傳統文化)의 토착화(土着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문제성(問題性)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現在) 시행(施行)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전승대책(傳承對策)으로는 후계자양성(後繼者養成)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수교육(傳受教育)과 기록자료(記錄資料)의 보존(保存)이다.

전수교육(傳受教育)이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된 종목(種目)에 한(限)하여 매(每) 보유자(保有者) 밑에 연수를 희망하는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을 두어 보유기(保有技)·예능(藝能)을 의무적(義務的)으로 교수(教授)하도록 하는 제도(制度)라고 할 수 있다. 개인종목(個人種目)의 경우에는 보유자(保有者) 1인당(人當) 전수생(傳受生) 2명(名)을, 단체종목(團體種目)의 경우에는 1단체당(團體當) 10명(名) 이내의 전수생(傳受生)을 지정하여 전수교육(傳受教育)에 충실(充實)하도록 의무(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보유자(保有者)에게 전수교육(傳受教育) 강사료(講師料)를 지급(支給)하고 전수생(傳受生)에게는 장학금(獎學金)을 지급(支給)하여 이 사업(事業)의 효율(效率)을 높이고 있다. 매(每) 보유자(保有者)마다 전수생(傳受生)을 두는 것은 보유자(保有者) 특유의 기(技)·예능(藝能)을 전수(傳授)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수생(傳受生)의 수(數)를 제한(制限)하는 것은 정예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意圖)가 내재(內在)되어 있다. 한편 일정기간(一定其間)이 지나면 전문가(專門家)의 심사를 거쳐 전수교육(傳受教育)을 이수(履修)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생 및 전수생 현황 (履修生 및 傳授生現況)

部 門 人 員	연 극 (演 劇)	음 악 (音 樂)	무 용 (舞 踊)	공 예 (工 藝)	民俗놀이	기 타 (其 他)	計
種 別	11	16	5	16	9	3	60
保 有 者	59	43	11	23	16	3	155
傳 受 生	87	70	23	27	22	5	234
履 修 生	54	44	12	0	1	0	111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制定)되고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지정(指定)이 개시(開始)된 이래 배출된 이수생(履修生) 및 전수생(傳授生)의 부문별(部門別) 현황(現況)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교육장소(教育場所)가 문제(問題)된다. 개인종목(個人種目)은 보유자(保有者)의 집이나 연구소(研究所) 등에서 전수교육(傳受教育)이 가능(可能)하지만 단체종목(團體種目)은 일정(一定)한 건물(建物)이 확보(確保)되지 않고는 전수교육(傳受教育)은 물론(勿論) 자체(自體)의 예능연마(藝能研磨)에도 지장이 크다. 이러한 필요성(必要性)에 따라 정부(政府)에서는 전수회관건립(傳受會館建立)을 지원(支援)하여 많은 성과(成果)를 거두었다.

전수회관건립현황(傳授會館建立現況)

所 在 地	名	傳 授 種 目	建 立 年 度	規 模
서 울	서울전수회관	봉산탈춤·강령탈춤·북청사자놀이·꼭두각시놀이·판소리	1973	201坪
양주(경기)	양주별산대전수회관	양주별산대놀이	1974	40坪
충무(경남)	충무무령문화재전수회관	통영오광대·승진무	"	40坪
안동(경북)	안동차전놀이전수회관	안동차전놀이	1974	10坪
고성(경남)	고성오광대전수회관	고성오광대	1973	35坪
부 산	수영야유전수회관	수영야유·좌수영어방놀이	1974	34坪
	동래야유전수회관	동래야유	1973	168坪

1973년도(年度) 전수회관건립(傳受會館建立)을 개시(開始)한 이래 전국(全國)의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重要無形文化財傳授會館) 건립현황(建立現況)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전수교육기관(傳授教育機關)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과 국악고등학교(國樂高等學校)를 빼놓을 수 없다.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에서는 주로 아악분야(雅樂分野)를 관장하여 아악(雅樂)의 보존(保存)과 진흥(振興)에 힘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最近)에는 민속무용(民俗舞踊) 등에 폭넓게 손을 써서 진흥책(振興策)을 강구(講究)하고 있다. 국악고등학교(國樂高等學校)는 국악(國樂)의 보급(普及)과 저변확대를 기하고 또 재질이 있는 학생(學生)에게는 고등학교(高等學校)에서부터 전문교육(專門教育)을 실시(實施)하여 훌륭한 국악인(國樂人)을 양성(養成)한다는 목적(目的)으로 설립(設立)되었다. 학교운영상(學校運營上), 학생(學生)의 자질 등 문제점(問題點)이 있기는 하지만 국악발전(國樂發展)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보다 큰 효과(效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악전문학교(國樂專門學校)로 발전(發展)해야 한다는 필요성(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수교육(傳授教育)에도 문제(問題)가 있다. 우선 학생(學生)에게 지급(支給)하는 장학금(獎學金)이 미흡(未洽)하여 장학금만으로는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란 곤란(困難)하며 교육방법(教育方法) 또한 전근대적(前近代的)이어서 능률상(能率上)의 문제점(問題點)이 있고, 교육기재(教育器材)의 불비(不備)로 다수인(多數人)에 대(對)한 교육(教育)이 불가능(不可能)하다. 한편 기능(技能)의 경우 세습적인 가업(家業)으로 전수(傳授)된 실정(實情)이어서 자녀(子女)가 전수성(傳授性)일 경우 교체가 곤란(困難)하다.

더욱이 교육효과(教育效果)의 측정이 곤란(困難)하다. 각(各) 보유자(所有者)의 집이나 연구소(研究所)에서 실시(實施)되고 있으므로 지도 감독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지도·감독을 담당할 전문가(專門家)의 확보(確保)도 지난(至難)한 실정(實定)이다.

원형보존(原形保存) 및 전승(傳承)을 위한 시책(施策)으로 원형(原形)에 대한 기록보존작업(記錄保存作業)을 들 수 있다.

기록보존작업(記錄保存作業)이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녹화(錄畵)·녹음(錄音)·채보(採譜)·채녹(採錄) 등 일련의 작업(作業)을 말하는데, 이미 설명한바 있지만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란 보유자(所有者)가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있으므로 보유자(所有者)의 기예능(技藝能)이 쇠퇴한 후 또는 보유자(所有者)의 사망후(死亡後)에도 계속해서 참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유자(所有者)로부터 후계자(後繼者)에로 전승(傳承)은 되지만 사람마다의 특징과 장기가 다른 물론,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란 시대(時代)감각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은 변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모에 대비해서 모든 기록작업(記錄作業)이 수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구·의상재료 등의 변천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어느 시대(時代)를 기점으로 하여 참고자료(參考資料)를 기록화(記錄化)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매년(每年) 발표공연 시(發表公演 時)에 녹화(錄畵)·녹음(錄音) 등의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이 이루어지면 시대적(時代的)인 변천을 연구(研究)하는데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될 것이다.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은 196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화(映畵) 22종(種), 음반(音盤) 15종(種), 책자(冊子) 1종(種) 등 모두 38종(種)을 완료(完了)하였으며, 특(特)히 1979년도(年度) 발표공연 시(發表公演 時)에는 「마당놀이」 16종(種)과 무대종목(舞臺種目) 19종(種)을 완전(完全) 녹화(錄畵)하여 기록보존자료(記錄保存資料)로 활용(活用)함은 물론(勿論) 주(週) 1회씩 방영(放映)하여 보급(普及)·진흥(振興)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여기에도 문제(問題)는 있다. 예산상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전과정을 수록하지 못하고 많이 생략해서 소요시간을 줄이는 괴로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촬영기사가 없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만을 전문적(專門的)으로 촬영(撮影)하는 전문촬영(專門撮影)기사의 양성이 시급(時急)하며, 촬영(撮影)을 지도·감독할만한 학자(學者)가 없다. 학자(學者)는 그 분야(分野)의 전문지식(專門知識)은 있지만 녹화(錄畵)에 대한 경험이 없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전담부서(專擔部署)를 두어 계속적으로 경험을 쌓게 하고 전문적(專門的)으로 연구(研究)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것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용역회사(用役會社)를 육성(育成)하여 활용(活用)하는 것도 좋은 방법(方法)이라 생각한다.

4.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토착화(土着化)

최근(最近) 전통문화(傳統文化)의 토착화(土着化)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다. 또한 전통문화(傳統文化)의 토착화방안(土着化方案)에 대한 대책(對策)이 검토(檢討)되고 있다. 토착화(土着化)라는 낱말은 이질적(異質的)인 사물(事物)이 일정(一定)한 지역(地域)에 들어와서 그 지역(地域)의 풍습(風習)이나 관습(慣習)에 동화(同化)되거나 동질성(同質性)으로 되게 한다는 뜻이므로 전통문화(傳統文化)의 토착화(土着化)란 말은 듣기가 좀 어색하다. 그러나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일찍이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단절기(斷截機)를 겪었고, 외래문명(外來文明)의 범람 속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世代)에게는 전통문화(傳統文化)란 거의 부재상태(不在狀態)이며 또한 전통의식(傳統意識)이 희박하다. 이러한 전통(傳統)의 불모상태(不毛狀態)에서 새로운 세대(世代)에 전통의식(傳統意識)을 심어주고 전통문화(傳統文化)를 가르쳐 이것을 이해(理解)하는 인구의 폭(幅)을 넓히고 기(技)·예능인(藝人)을 폭넓게 배출하는, 다시 말하면 저변확대(底邊擴大)를 위한 노력이라고 풀이하면 그런 대로 수궁이 갈 것 같다. 따라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토착화(土着化)를 위하여는 정부(政府)에서는 보유자(保有者)들이 대중(大衆)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하며, 재벌(財閥)그룹 또는 문화재단(文化財團)에서 그들의 활동(活動)을 적극적(積極的)으로 지원(支援)하는 제도(制度)가 시급(時急)하며, 「매스컴」이 적극적(積極的)으로 참여(參與)하여 그들의 활동(活動)을 지원(支援)하고 홍보(弘報)를 통(通)해서 일반(一般)의 이해(理解)를 증진(增進)시키는 한편 초등교육과정(初等教育課程)에서부터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에 대한 교육(教育)을 실시(實施)하여 이해력(理解力)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4-1. 여건조성(與件造成)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가 스스로 진흥(振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條件)을 구비(具備)해주는 작업(作業)을 여건조성(與件造成)이라고 풀이한다면, 다음 몇 가지 대책(對策)을 들 수 있다.

4-1-1. 정부지원(政府支援)의 확대(擴大)

보유자(保有者)들의 처우(處遇)를 대폭적(大幅的) 개선(改善)하여 그들을 생계문제(生計問題)로부터 해방(解放)시켜 보유종목(保有種目)의 기예능연구(技藝能研究)와 보급(普及)·진흥(振興)에만 전념(專念)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호비(生界保護費)를 인상하고, 전수교육비(傳授教育費)와 활동비(活動費)의 지원폭(支援幅)을 넓히며, 출연료(出演料)의 인상 등 다방면(多方面)으로 개선책(改善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1-2. 상설발표장(常設發表場)의 확보(確保)

처우(處遇)가 개선(改善)된 보유자(保有者)들이 활동무대(活動舞臺)가 있어야 한다. 물론(勿論) 전국적(全國的)으로 7개(個)의 전수회관(傳受會館)이 있으나 이는 전수교육장(傳授教育場)일 뿐 무대(舞臺)라고 하기는 곤란한 소규모(小規模) 시설(施設)이다. 물론(勿論) 국립극장(國立劇場) 소극장(小劇場)에서는 전통예술분야(傳統藝術分野)의 공연(公演)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나 자체목적(自體目的)이 있기 때문에 전용무대(專用舞臺)로 활용(活用)할 수 없는 실정(實情)이다. 이렇게 보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를 계속 공연(公演)할 수 있는 전용무대(專用舞臺)의 확보(確保)가 시급하다. 지난번 「마당놀이」 발표공연(發表公演)에서 얻은 결론(結論)이지만 「마당놀이판」의 확보도 절실한

실정(實情)이며, 상설무대(常設舞臺)가 확보(確保)될 경우 입장료수입(入場料收入)으로 자체유지(自體維持)가 가능(可能)할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뿐만 아니라 공예분야(工藝分野)의 상설전시장(常設展示場) 또한 시급히 확보(確保)되어야 한다. 보유자(保有者)들의 작품(作品)을 상설(常設) 전시(展示)하여 판로(販路)를 알선하는 한편 일반(一般)에게는 전통공예품(傳統工藝品)의 표본(標本)을 제시(提示)하여 전통공예기술(傳統工藝技術)의 보급(普及)·진흥(振興)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용무대(專用舞臺) 또는 상설전시장(常設展示場)의 확보방안(確保方案)으로는 고층건물(高層建物) 신축(新築)의 경우에 소형(小形) 공연장(公演場) 또는 전시장(展示場) 설치(設置)를 의무화(義務化)하는 것이다. 고층빌딩, 호텔, 백화점, 상가 아파트 등의 대형건물(大形建物)에는 여사(如斯) 휴식공간이 불가피하며, 특히 호텔의 경우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4-2. 재벌기업(財閥企業)의 참여(參與)

기업(企業)이 문예진흥기금(文藝振興基金)을 기부할 경우 그 액면(額面)에 대해서는 과세(課稅)하지 않는 제도(制度)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업(企業)의 호응도는 크지 못하다. 물론 기업자체(企業自體)가 교육재단(教育財團), 문화재단(文化財團)을 설립(設立)하여 문화발전(文化發展)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존(保存)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이 적은 것 같다. 금후 기업(企業)의 지원(支援)이 절실히 요청(要請)된다.

기업(企業)의 지원방안(支援方案)으로는 전통문화보존단체(傳統文化保存團體)를 직접(直接) 지원(支援) 육성(育成)하는 경우 또는 일정(一定)한 목적(目的)을 표시(表示)하여 문예진흥기금(文藝振興基金)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보존단체(保存團體)를 직접(直接) 흡수하여 전속단체(專屬團體)로 육성(育成)하는 방안(方案)이 가장 바람직하다.

운동선수(運動選手)의 경우와 같이 정부(政府)에서 지정육성(指定育成)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일정(一定)한 종목(種目)에 대한 보유자(保有者)를 흡수하여 일정(一定)한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기업(企業)의 이름으로 공연(公演)하도록 하게 되면, 보유자(保有者)들의 생활(生活)은 안정(安定)되고 기업의 홍보활동(弘報活動)의 편의(便宜)를 도모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4-3. 매스컴의 지원(支援) 및 참여(參與)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미디어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급(普及)을 위해 큰 구실을 해왔고 앞으로도 가장 큰 역할(役割)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

공연(公演), 전시회(展示會) 등을 직접(直接)와서 보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인구(人口)는 대단하다. 전통문화(傳統文化)의 홍보(弘報), 이해(理解)를 위한 매스미디어의 공로를 부연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며, 계획적인 참여 또는 지원(支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T.V. 라디오 등에서는 전속단체(專屬團體)의 육성(育成)이 의무화(義務化)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대(現代) 음악(音樂)이나 무용단(舞踊團)이 있지만 그래도 중

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어느 한 종목(種目)을 맡아 육성(育成)하고 보급(普及)할 수 있는 조처(措處)가 필요(必要)하다.

4-4. 교육(教育)을 통(通)해 저변확대(底邊擴大)

교육(教育)은 초등교육(初等教育)에서부터 시작(始作)하는 것이 좋다. 자라나는 세대(世代)에게는 국민학교교육(國民學校教育)부터 전통예술(傳統藝術)에 대한 기초교육(基礎教育)이 실시(實施)되어야 하며 전통예술(傳統藝術)을 고리타분한 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물론 어린 학생(學生)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의 확보가 문제된다. 따라서 교사양성(教師養成) 기관에서부터 전통예술(傳統藝術)에 대한 교육(教育)이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既) 배출된 교사(教師)들에게는 재교육(再教育)을 통한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성인(成人)들의 전통예술(傳統藝術)에 대한 이해(理解)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문화(傳統文化) 또는 무형문화재보존(無形文化財保存)의 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考慮)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하나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원형(原形)을 발굴하여 후세(後世)에 원형(原形) 그대로 전승(傳承)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법(方法)이다. 현재(現在) 정부(政府)에서 실시(實施)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지정(指定)과 보유자(保有者)의 인정(認定), 보유자(保有者)에 대한 생계보호대책(生界保護對策), 후계자(後繼者) 양성(養成)을 위한 전수교육(傳授教育)의 실시(實施), 제반(諸般) 기록자료(記錄資料)의 생산(生産) 보존(保存) 등 일련의 사업(事業)은 모두 원형(原形)을 찾아 잘 보존(保存)하였다가 후세(後世)에 승계(承繼) 시키고자 하는 기초적(基礎的)인 작업(作業)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발굴(發掘)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를 보급(普及)·진흥(振興)시키고,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저변확대(底邊擴大)를 통(通)해 전통문화(傳統文化)가 새 문화창조(文化創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일이다. 이는 정부(政府)의 지원(支援)만으로도 불가능(不可能)하며 모든 사회문화단체(社會文化團體)의 지원(支援) 및 참여(參與)가 필요(必要)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문화단체(社會文化團體), 재벌기업(財閥企業) 또는 매스미디어의 적극적(積極的) 참여(參與)와 보유자(保有者)의 노력이 일치할 때 그 성과(成果)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